

2.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의 복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이 출생가족과 출신국의 보호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외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명에서부터 아동의 ‘ , ’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가 큰 실정임.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 ’하려는 구시대적 관점을 탈피하여 아동입양의 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며, 1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아울러 양자가 된 자 등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
」에서
「
」로 변경함() .

나.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
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1)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
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
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
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함(7) .

라. . 가정폭력·약 등
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10) .

마.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
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11) .

바. 1. 3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 재산
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를 효
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13).

사.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
위를 가지도록 함(14).

아. , , , 검사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
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17).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 , 중앙입양원
은 입양아동·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
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
행하도록 함(26).

차.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
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
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36 1 · 2).

카.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36 3).

법률 제 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제1 조 총칙

제1 () (入養 |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 (養子 |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

1. “ ” 18 .
2. “ ” 「 」 2 2 :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 ”

4. “ ” 「 」 2 5 :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 ()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4 ()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 ()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
화를 위하여 5 11 , 1 1
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1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 (.) ① 국가는 입양아동등에 대한 사후 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 1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8 ()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9 ()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 ·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 군수 ·구청장(“ ”)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 ” | 따른 보장시설(“ ”) |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군·구·자치구가 인정하는 가정·친척·친척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군·구·자치구 또는 시장·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제10 () ① (養親 | 될 사

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성폭행·가정폭력·약물·알코올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

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11 () ① 9 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9 10 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12 13 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자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1 1 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 1 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 ,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 () ① 9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
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부모가 제11 단서의 사유에 의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9 2 :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13 1 2
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 4 11 1 :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 4 5
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 () ① 12 1 :에 따른 입양의 동의
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 .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 1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 4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14 ()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15 ()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 ()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 1 2: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

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7 () ① ,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과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과양이 청구된 아동이 13 |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과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8 () 국내에서 제9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9 :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10 1)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4. 12 13)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제19 ()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

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
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
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
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양자로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사람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31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

- 제20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 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10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서 기록할 수 있다.

⑥ 제51에서 정한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⑦ 제4 51에 따른 입양기

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 ()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 12 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 ()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계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를 거친다.

제24 () ①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자치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 9 2항에 따라 보호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0조의 따른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 」 제110조의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25 () ① 1

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앙입양원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

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

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2.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3.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4.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단서 및 제28조 제1항 단서 중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 () ① 1 을 포함한 9 1 .

②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중앙입양원 원장은 중앙입양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입양원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⑤ 이사, 감사 및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 () ①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 () ① 중앙입양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제1 26 4 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입양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입양원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제31 ()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한다.

② 국외 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2 () ① 20 11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1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진하게 양

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 ,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 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6 ()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4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요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지도·감독 등

제38조 () ① , .
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제7 장 보칙

제40 () . 39 1 3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 ()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 ()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 () 중앙입양원의 임직원은

「 」 129 132 3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 장 벌칙

제44 () 3 3

이하의 징역 또는 2 .

1. 11 , 18 19 3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2. 20 조 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

3. 37 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20 조 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 () , , 사용인, 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 () 1 .

제2 ()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입양정보원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21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포괄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입양정보원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3 ()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

제4 () 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 」 「 」양특례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 3

3. 「 」 2 2 (要保護兒童) 을 입양한 가정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1

차. 입양특례법

③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1 4

4. 「 18 | 미만의 아동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4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 18 | 미만의 아동

제4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 18 | 미만의 아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